

승강기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 가. 단지명 : 진접반도유보라아파트
- 나.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 1로 145
- 다. 단지규모 : 33개동 873세대, 연면적 133,028.2687㎡, 승강기 61대, 수전용량 4,000KW, 발전기 용량 900KW, 가스 계량기 873개

2. 관련근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 가. 용역명 :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 나. 용역 기간 : 2016년 10월 1일 ~ 2018년 9월 30일
- 다. 용역 내용 :
 - ① 승강기 유지 보수 요역
 - ② 버튼 및 소모성 부품 무상 교체
 - ③ 승강기 고장 신고 후 30분 이내 도착
 - ④ 승강기 유지 관리법에 의한 점검 일체
- 라. 입찰 방식 : 일반공개경쟁입찰
- 마. 낙찰자 선정 방식 : 적격심사제
- 바.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16. 09. 08. 18시 까지
- 사. 개찰 일시 : 2016. 09. 21. 13시
- 아.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입찰참가업체 참석요망)

4. 입찰 참가자격

-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에 의한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나. 현장설명회 참석업체.

5. 입찰 제출서류

-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27조(제출서류)의 서류 일체.(누락 시 무효 처리함)
- 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 서류 일체(누락 시 무효 처리함)
- 다. 서류 및 서류 제출 처
 - ①.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가액의 5%) : 별도 밀봉 제출, 입찰서 내 제출 서류 필히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서류미비로 탈락 처리함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②. 기타 서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라.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6. 09. 08. 18시 까지

6. 입찰보증금

- 가.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 나.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 다.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현금의 경우 신한은행 140-008-725127 예금주 : 진접반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라.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마.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7. 현장설명회

- 가. 현장설명회 일시: 2016년 09월 01일 오전 10시, 입주자대표회의실,

8. 입찰무효

-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84호 【별표 3】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문자)
- 다. 현장설명회 불참자

9.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

가. 납부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으로 한다.

나.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다.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현금의 경우 신한은행 140-008-725127 예금주 : 진접반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라. 납부기한 :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784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의 허위 또는 업체간 담합이 확인될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라.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응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당 아파트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527-2461)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16년 8월 25일

진접반도유보라아파트 관리사무소(직인생략)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 | | | 비고 |
|-------------------------|-------------------|----------|----------------------------|----------|-----|-----|-----|-----|----|
| | |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AAA ~ BB+, BB ^o | | | | | | |
| | | 14.5 | BB- | | | | | | |
| | | 14 | B+, B ^o , B- | | | | | | |
| | | 11 | CCC+ 이하 | | |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 | | | | |
| | | 10 | 1건 | | | | | | |
| | | 5 | 2~3건 | | | | | | |
| | | 1 | 4건 이상 |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
| | | 8 | 8~9건 | | | | | | |
| | | 6 | 6~7건 | | | | | | |
| | | 4 | 4~5건 | | | | | | |
| | | 2 | 3건 이하 | | |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 5순위(20%) |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 | | | |
| | | 3 | 보통(40%) | | | | | | |
| | | 1 | 부족(30%) | | | | | | |
| | 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30%) | | | | | | |
| | | 3 | 보통(4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 | |
| | | 24 | 2순위(20%) | | | | | | |
| | | 18 | 3순위(40%) | | | | | | |
| | | 12 | 4순위(20%) | | | | | | |
| | | 6 | 5순위(20%) | |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

<비고>

-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관리규약 <별지 제11호 서식> 비교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서,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다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8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